화 성 시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시 보

선	기관의 장
람	

제 207호

2026년 11월 9일 (월)

차 례

공 고

화성시 공고 제2026-3640호	상생협력 프로젝트 삼성블루윙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 결정내용 공개 공고
화성시 공고 제2026-3649호	「화성시 도시재생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화성시 공고 제2026-3652호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공고 제2026-3658호	능동지구 도시계획시설(학교:초등학교1호)부지 조성공사 도시계획시설(학교:초등학교1호)사업 실시계획(변경)에 관한 주민열람·공고
화성시 공고 제2026-3659호	제25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 공고
화성시 공고 제2026-3666호	구포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 실시계획(변경)에 관한 주민열람·공고
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1166호	2026년 10월 재산세 수시분 및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1192호	도로점용(굴착)허가 내용 공고[(굴착)서신 제2026-99호, 맑은물사업소(맑은물시설과), 서신면 송교리 371-6번지 일원]
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1202호	개인정보 처리 위탁내역 공고
화성시 동탄구 공고 제2026-540호	개인정보 처리 위탁내역 공고 [2026년 11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고지서 제작 및 인쇄]

고 시

화성시 고시 제2026-873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회 람									

발행 : 화 성 시 편집 : 언론담당관

화성시 공고 제2026-3640호

상생협력 프로젝트 삼성블루윙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 결정내용 공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같은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상생협력 프로젝트 삼성블루윙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결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공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9일

화 성 시 장

1. 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 상생협력 프로젝트 삼성블루윙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나. 위　　치: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반월동 420번지 일원
다. 사업시행자: 삼성전자 주식회사
라. 계획규모: 55,778㎡

2. 공개개요

가. 공개내용: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붙임 1’ 참고)
나. 공개방법: 화성시 홈페이지(http://www.hscity.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다. 공개기간: 2026. 11. 09. ~ 2026. 11. 23.(공고일로부터 15일간)

3. 의견제출 및 방법

가. 제출의견: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관한 의견
나. 제출기간: 공개기간과 동일
다. 제출방법: [붙임 2] 서식에 따라 화성시(도시정책과)에 서면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서 주민의견 등록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도시정책과(031-5189-23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1부.
2. 주민의견 제출양식 1부.　끝.

주민의견 제출서

사 업 명	상생협력 프로젝트 삼성블루윙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사 업 장 위 치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반월동 420번지 일원	
계 획 수 립 기 관	화성시	
의 견 제 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에 관한 의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

화성시 공고 제2026-3649호

「화성시 도시재생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화성시 도시재생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 운영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1월 9일

화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도시재생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 화성시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재쇠퇴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제도를 마련하고, 주민 주도의 자생적인 거점시설(공동이용시설)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도시재생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5조)
- 나. 거점시설 관리위탁, 사용허가 절차 및 수탁자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8조, 제11조～제14조)

- 다. 거점시설 운영평가 및 성과 연계 지원(사용료 차등 감면,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0조, 제16조)
- 라. 사후관리 및 평가 심의를 위한 화성시 도시재생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제19조)

4. 입법예고기간: 2026. 11. 9.(월) ~ 2026. 11. 30.(월) [21일간]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 11. 9.(월) ~ 2026. 11. 30.(월) [2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 출 처: 화성시 도시개발과 도시재생팀

○ 주　소: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도시개발과

○ 연락처: 031)5189-6364 / FAX 031)5189-1530 / 이메일 nicekd@korea.kr

화성시조례 제 호

화성시 도시재생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지역에 대한 사후관리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고,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공동이용시설”이란(이하 “거점시설”이라 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화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3. “수탁자”란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화성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사용자”란 도시재생 거점시설 사용을 허가받은 자 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 그리고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란 도시재생 사업으로 만들어진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주민들을 위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며 수익을 마을에 재투자하여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키우는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지역의 사후관리와 거점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용료 감면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

제4조(도시재생 사후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쇠퇴를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도시재생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이후에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 주요 목표 및 성과
2. 생활권자 주민과 주민협의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의 의견수렴
3. 민간 참여 확대 방안
4. 도시쇠퇴 방지 대책
5.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 및 평가)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 및 효과 지속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사업
2.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3.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 사업
4. 도시재생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 사업
5. 도시재생사업 효과 확산을 위한 지역 콘텐츠 개발 사업
6. 민간 참여 활성화 및 수익창출확대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은 법인이나 단체의 사업 추진 실적 및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예산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의 결정에 반영해야 하며, 사업 성과가 현저히 미흡하거나 목적 외로 비용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제3장 거점시설 운영 및 관리

제6조(거점시설의 운영 및 위탁 등) ① 시장은 거점시설을 직접 운영 및 관리한다. 다만,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공공기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거점시설을 관리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와 대상범위, 기간, 위탁료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위탁·수탁 관리계약으로 체결해야 한다.

③ 위탁료의 산정기준, 방법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 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한다.

④ 거점시설을 위탁운영 하려는 자는 시설운영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갱신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해당 시설과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불공정한 사무의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 상당액을 변상해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하지 못한다.

제8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수탁 계약의 의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주민공동이용 목적과 사업수행계획에 위반하여 관리·운영하는 경우
4.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하는 경우
5. 수탁자의 운영 및 관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수탁자의 자진 해지 요청이 있는 경우

제9조(사용료의 부과 및 감면 등) ① 시장은 거점시설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에 따라 거점시설 내 카페, 체험학습장 등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에 대해서 제16조의 운영평가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의 거점시설 사용료를 차등하여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감면 등급 및 비율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최초 사용허가 연도이거나 공실 해소 등 거점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1의 감면 등급을 부여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거점시설 중 주민공동체활동, 지역활성화 및 공공이익증진 등 순수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는 운영공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 및 「화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7

조의2에 따라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거점시설 운영 성과 연계 지원 등) ① 시장은 거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점시설을 운영하는 자(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를 포함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거점시설의 유지·관리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전기료, 수도료 등 기본운영에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시장이 거점시설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최초 위탁일로부터 최대 3년 이내로 하며, 그 구체적인 지원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③ 거점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시설 운영 및 수익사업 등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재생사업 유지·관리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 지역활성화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④ 시장은 거점시설이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제16조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 재정 자립도가 향상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성과를 반영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운영비 지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거점시설의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거점시설 사용료 차등 감면
2. 수탁자 선정 심사 시 가점 부여
3. 그 밖에 시장이 거점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⑥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신청, 교부, 정산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장 거점시설 사용허가 및 제한

제11조(사용허가 등) ① 거점시설의 공간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거점시설의 설립 목적, 시설의 수용 능력 및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시장은 거점시설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확보와 그 밖에 원활한 시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④ 거점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점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및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의 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행사 및 모임인 경우
3.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상 지장이 있는 경우
4. 타인에게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6. 이 조례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7.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8.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9. 그 밖에 공익에 부합하지 않거나 거점시설의 본래 기능 유지 및 주민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행위의 제한) ① 거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흡연행위
2. 고성·난무 등 다른 사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특정 종교·정치활동을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등의 행위
4. 그 밖에 사회 통념상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시장은 사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사용자의 책임 등)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기간 종료 후 즉시 원상복구 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대시설은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장 지도·감독 및 위원회

제1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운영상황,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또는 조사 결과 위탁 운영이 부실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예산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시정이 되지 않을 시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운영평가) ① 시장은 거점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거점시설 운영 평가 연계 지원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운영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른 감면 등급의 부여·조정에 관한 사항을 제1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도시재생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화성시 도시재생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관리·운영 방안에 관한 사항
3. 관리위탁 계획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
4. 관리위탁 방법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5.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및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6. 위탁계약의 체결·변경·해지 등에 관한 사항
7. 거점시설 사용료의 부과 및 감면에 관한 사항
8.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시재생 사후관리와 거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재생업무 담당 실장·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화성시의회 의원 2명

2. 화성시 도시재생 업무 담당 실장·국장 및 부서장

3.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시장은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 위원회의 원활한 구성 및 전문성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도시재생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 관련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화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30조를 각각 삭제한다.

■ 화성시 도시재생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운영 조례 [별표 1]

거점시설 사용료 감면 비율(제9조 관련)

감면 비율	감면 대상
80%	거점시설 운영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
50%	거점시설 운영평가 결과 우수 등급
30%	거점시설 운영평가 결과 보통 등급
감면없음	거점시설 운영평가 결과 미흡 등급

운영연도별 거점시설 운영비 지원 비율(제10조 관련)

지원 비율	지원 대상
100%	거점시설 최초위탁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80%	최초위탁일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50%	최초위탁일 2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운영평가결과 등급별 운영비 지원 적용 비율(제10조 관련)

적용비율	거점시설 운영평가결과 등급
100%	최우수 등급 및 우수 등급
80%	보통 등급
50%	미흡 등급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화성시 도시재생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의 견	비 고

화성시 공고 제2026-3652호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1월 9일

화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보완하고, 위원의 자격·구성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지방보조금 관리의 전문성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보완함(안 제5조제1항)

나. 위원의 자격 및 구성을 구체화함(안 제5조제4항)

다. 위원회 회의 운영 기준을 신설함(안 제7조의2)

4. 자치법규안 : 별 첨

5. 입법예고기간 : 2026. 11. 9.(월) ~ 2026. 11. 30.(월) (21일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 11. 9.(월) ~ 2026. 11. 30.(월) (21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다. 기재내용 :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 출 처 : 화성시 예산재정과 문화복지예산팀

○ 주 소 :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본관 4층 예산재정과

○ 전 화 : 031-5189-7055

○ 팩 스 : 031-5189-1622

○ 이 메 일: hosu13@korea.kr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의 견	비 고

화성시조례 제2026-3652호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중 “구성”을 “기능 및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0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자치행정 담당 실장·국장, 예산 담당 실장·국장 및 복지 담당 실장·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라. 시민단체 대표

마. 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바. 그 밖에 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하며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화성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화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신 설>	제5조(화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① 법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0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①·② (생 략)	②·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신 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자치행정 담당 실장·국장, 예산 담당 실장·국장 및 복지 담당 실장·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라. 시민단체 대표 마. 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단체 대표 바. 그 밖에 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 설>		제7조의2(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하며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화성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

	결할 수 있다.

참고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⑧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

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⑨ 위원은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⑪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0조의3(지방보조금집행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지방보조금집행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보조금집행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제재부가금의 산정, 가중 및 감경에 관한 사항,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의 검토에 관한 사항
2. 법 제32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소명자료의 검토에 관한 사항
3. 법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요건의 충족 여부 및 포상금액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34조제1항의 각 호의 해당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등 부정수급 여부 판단에 있어 지방보조금집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확정 및 사후조치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집행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에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 위원은 기획조정, 예산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임명하고, 민간위원은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위촉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⑦ 지방보조금집행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안건 관련 담당공무원, 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의뢰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지방보조금집행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집행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법 제26조제2항제7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집행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참고2 **현행 자치법규 전문**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제재부가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신청이 없는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지방보조사업인 경우
2.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주요시책 수행상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4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사유)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자기자금을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

우

5.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의2(제재부가금 부과 등) ① 시장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이 취소된 지방보조사업과 그에 따라 반환된 지방보조금과 그 이자수익, 제재부가금 부과 여부 등 관련 현황에 대한 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작성된 자료에 대하여 화성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화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화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방보조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화성시 공고 제2026-3658호**

능동지구 도시계획시설(학교:초등학교1호)부지 조성공사 도시계획시설(학교:초등학교1호)사업 실시계획(변경)에 관한 주민열람·공고

화성시 병점구 능동 682-1번지 일원 화성 능동지구 도시계획시설(학교:초등학교1호)부지 조성공사 실시계획(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초등학교1호)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에 앞서, 같은 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1. 9.

화 성 시 장

1.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개요

가. 위치: 화성시 병점구 능동 682-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학교:초등학교1호)

○ 명칭: 능동지구 도시계획시설(학교:초등학교1호)부지 조성공사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도시계획시설(학교)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결정	1	학교	초등학교	화성시 병점구 능동 682-1번지 일원	11,778	화고 고시 제2015-346호 (15.7.22)	
시행	1	학교	초등학교	화성시 병점구 능동 682-1번지 일원	11,846.4	-	

○ 실시계획(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사항	변경사유
학교 (초등학교1호)	○ 면적 변경 - 당초 : 11,778㎡ - 변경 : 11,846.4㎡ ○ 사업기간 변경 - 당초 : 실시계획인가일 ~ 2022. 12. 31. - 변경 : 실시계획인가일 ~ 2026. 12. 31	○ 지적확정측량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및 지연되었던 학교 설립이 확정됨에 따라 사업기간 변경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성로 17, 302호(반송동, 풍성위버폴리스)

○ 성명: - 당초 주식회사 준엔터프라이즈 (대표 전준홍)

- 변경 유한책임회사 준엔터프라이즈 (대표 전준홍)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수 일: 실시계획 고시일

○ 준공예정일: - 당초 2022년 12월 31일

- 변경 2026년 12월 31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

2. 열람기간: 공고일 익일로부터 14일간
3. 열람장소: 화성시청 도시정책과
4. 관련도서: 게재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5. 의견제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도시정책과(031-5189-26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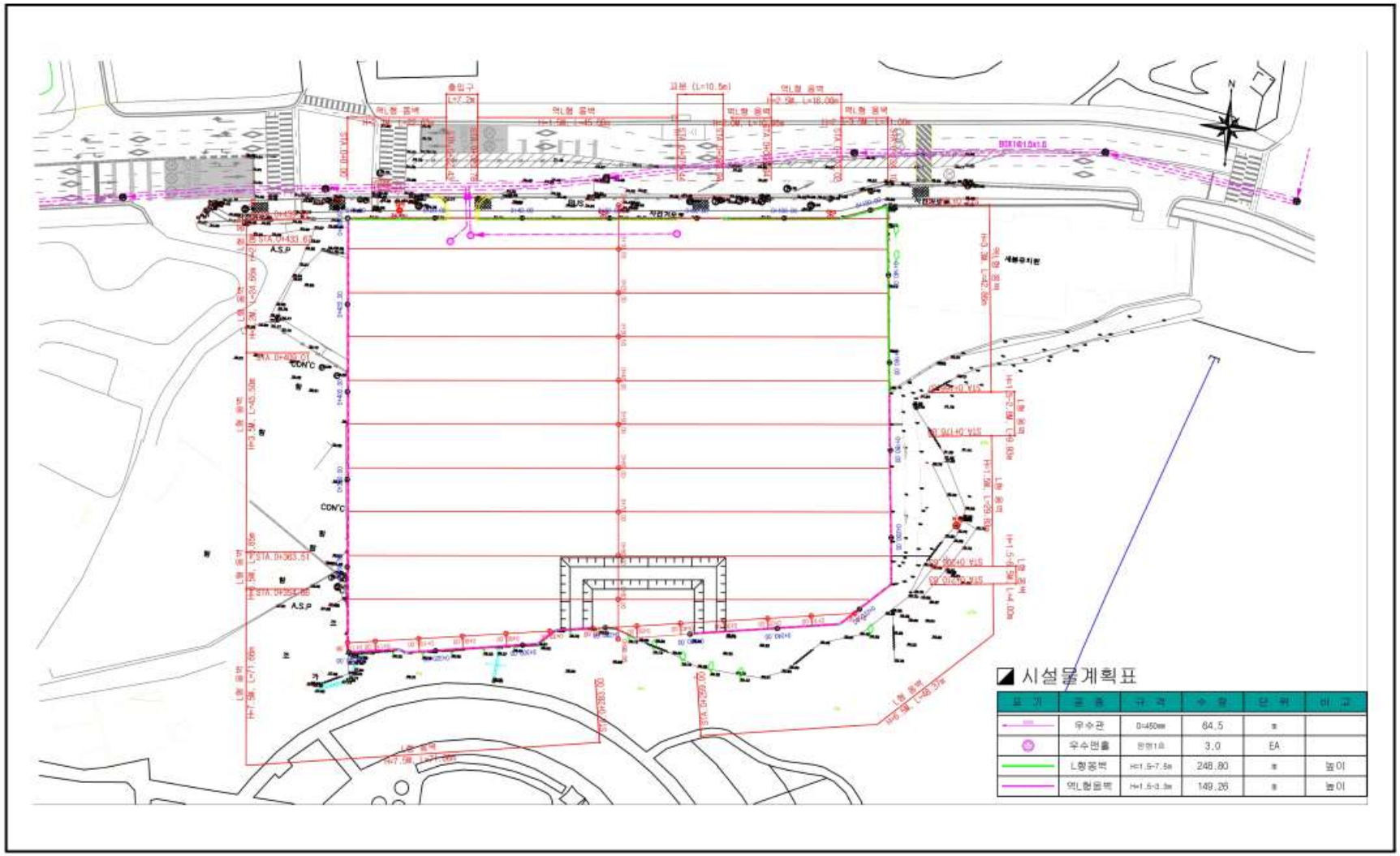
연번	읍면동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합 계		기정		11,778	11,778						
		변경		11,846.4	11,846.4						
1	능동	657-2	대	196	196	**자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대치동,******타워)				
2	능동	657-28	대	831	831	**자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대치동,******타워)				
3	능동	677-43	종	2	2	**자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대치동,******타워)				
4	능동	678-1	대	625	625	**자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대치동,******타워)				
5	능동	678-4	대	636	636	**자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대치동,******타워)				
6	능동	678-5	도	25	25	**자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대치동,******타워)				
7	능동	678-6	구	34	34	**자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대치동,******타워)				
8	능동	679	잡	95	95	**자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대치동,******타워)				
9	능동	679-4	잡	349	349	**자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대치동,******타워)				
10	능동	679-2	전	1,618	1,618	**자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대치동,******타워)				
11	능동	680-1	대	316	316	**자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대치동,******타워)				
12	능동	680-2	대	694	694	**자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대치동,******타워)				
13	능동	680-3	대	665	665	**자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대치동,******타워)				
14	능동	680-4	대	321	321	**자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대치동,******타워)				
15	능동	681-5	대	1	1	**자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대치동,******타워)				
16	능동	682-1	장	3,772	3,772	**자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대치동,******타워)				
17	능동	683-3	장	2	2	**자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대치동,******타워)				
18	능동	684-2	장	376	376	**자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대치동,******타워)				
19	능동	685-4	잡	295	295	**자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대치동,******타워)				
20	능동	685-6	잡	280	280	**자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대치동,******타워)				
21	능동	685-8	대	103	103	**자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대치동,******타워)				

연번	읍면동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22	능동	685-11	전	226	226	**자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대치동,******타워)				
23	능동	1027-6	전	21	21	**자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대치동,******타워)				
24	능동	1027-9	도	53	53	국 (기획재정부)	-				
25	능동	1027-10	전	35	35	**자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대치동,******타워)				
26	능동	1027-11	도	207	207	국 (기획재정부)	-				
측량오차				68.4	68.4						

□ 위치도



□ 공사계획평면도


시설물계획표
표 기
공 종
규 격
수 량
단 위
비 고
우수관
D=450mm
64.5
m
우수맨홀
3.0
EA
L형옹벽
H=1.5~7.5m
248.80
m
높이
역L형옹벽
H=1.5~3.5m
149.26
m
높이

[붙임2]

주민의견 제출서

안 건 명		
사업위치		
사업시행자		
의견진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주민공람공고에 따른 의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규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화성시 공고 제2026-3659호**
-

- 부의안건 공고

-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제25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2026. 11. 16. ~ 12. 17.)**에 부의할 안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 통 · 리 ·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특례시 발전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시민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6	202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7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	제6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9	다함께돌봄센터(봉담) 민간위탁 동의안
10	전곡항 지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2021년~2030년) 반영(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1	화성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성시 공예문화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화성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4 화성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2025년 추진상황 점검 결과 보고의 건

15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6 제10기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안

17 화성시 우리꽃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2026. 11. 9.

화 성 시 장

• **화성시 공고 제2026-3666호**

구포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 실시계획(변경)에 관한 주민열람 · 공고

화성시 효행구 비봉면 구포리 614-18번지 일원 화성 구포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 실시계획(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에 앞서, 같은 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1. 9.

화 성 시 장

1.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개요

가. 위치: 화성시 효행구 비봉면 구포리 614-18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칭: 구포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도시계획시설(도로)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결정	중로	1	5	20~24	집산도로	546	비봉중로2-2 (구포리 558-6)	구포리 607-1	일반도로	-	화성시 고시 제2022-195호 (2022. 3. 23.)	보도폭 양측 2.5~3.0m, 자전거도로 폭 편측 1.5m
시행	중로	1	5	20	집산도로	546	비봉중로2-2 (구포리 558-6)	구포리 607-1	일반도로	-	화성시 고시 제2022-195호 (2022. 3. 23.)	보도폭 양측 2.5~3.0m, 자전거도로 폭 편측 1.5m
결정	중로	2	7	15~21.5	집산도로	489	소로1-1 (구포리 799-10)	구포리 700-2	일반도로	-	화성시 고시 제2022-195호 (2022. 3. 23.)	보도폭 양측 2.5m, 자전거도로 폭 편측 1.5m
시행	중로	2	7	15	집산도로	489	소로1-1 (구포리 799-10)	구포리 700-2	일반도로	-	화성시 고시 제2022-195호 (2022. 3. 23.)	보도폭 양측 2.5m, 자전거도로 폭 편측 1.5m
결정	소로	3	17	6	국지도로	653	중로1-5 (구포리 607-2)	중로2-7 (구포리 700-6)	일반도로	-	화성시 고시 제2022-195호 (2022. 3. 23.)	보 · 차혼용
시행	소로	3	17	6	국지도로	653	중로1-5 (구포리 607-2)	중로2-7 (구포리 700-6)	일반도로	-	화성시 고시 제2022-195호 (2022. 3. 23.)	보 · 차혼용

○ 실시계획(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5	중로1-5	· 면적 변경 - 면적 = 14,156㎡ → 14,120㎡(감 36㎡)	· 지적경계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계획 선형 변경은 없음)
중로2-7	중로2-7	· 면적 변경 - 면적 = 9,328㎡ → 9,313㎡(감 15㎡)	· 지적경계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계획 선형 변경은 없음)
소로3-17	소로3-17	· 면적 변경 - 면적 = 5,262㎡ → 5,281㎡(증 19㎡)	· 지적경계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계획 선형 변경은 없음)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기정 :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비봉면 양노로 106-6

-변경 :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비봉면 구포리 705-1

○ 성명: 비봉지역주택조합(조합장 정희원)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수 일: 실시계획 고시일

○ 준공예정일: 2028년 12월 31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

2. 열람기간: 공고일 익일로부터 14일간
3. 열람장소: 화성시청 도시정책과
4. 관련도서: 게재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5. 의견제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도시정책과(031-5189-26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2]

주민의견 제출서

안 건 명		
사업위치		
사업시행자		
의견진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주민공람공고에 따른 의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규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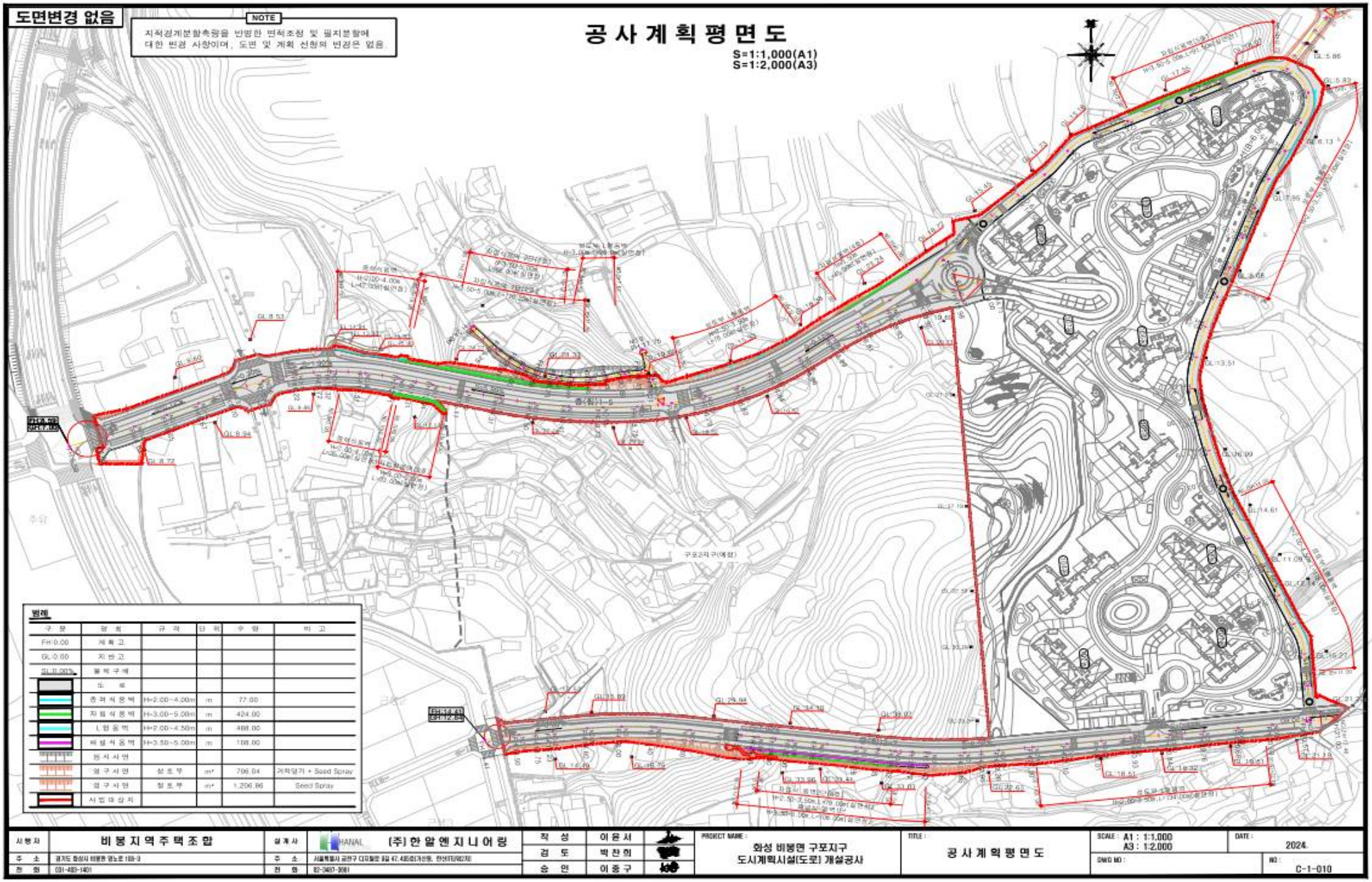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

Ⅰ. 사업시행자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변경 없음)

1 위치도(변경 없음)

[위 치 도]




도면변경 없음
NOTE
지적경계분할측량을 반영한 면적조정 및 필지분할에 대한 변경 사항이며, 도면 및 계획 선형의 변경은 없음.
공 사 계 획 평 면 도
S=1:1,000(A1)
S=1:2,000(A3)
범례
구 분 | 명 칭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FH:0.00 | 계획고 | | | | |
GL:0.00 | 지반고 | | | | |
SLOPE | 용벽구배 | | | | |
도 로 | | | | | |
중력식옹벽 | H=2.00~4.00m | m | 77.00 | |
지중식옹벽 | H=3.00~5.00m | m | 424.00 | |
L형옹벽 | H=2.00~4.50m | m | 488.00 | |
비중식옹벽 | H=3.50~5.00m | m | 108.00 | |
등 시 사 면 | | | | | |
절 구 사 면 | 식 생 부 | m² | 706.04 | 객토당기 + Seed Spray |
절 구 사 면 | 식 생 부 | m² | 1,206.86 | Seed Spray |
시 점 대 상 지
구모2지구(예정)
시행자 비봉지역주택조합
주 소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영노로 169-3
전 화 031-483-1401
설계사 (주)한알엔지니어링
주 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 47, 405호(가산동, 한신IT타워2차)
전 화 02-3481-3081
작 성 이윤서
검 도 박찬희
승 인 이종구
PROJECT NAME : 화성 비봉면 구모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
TITLE : 공 사 계 획 평 면 도
SCALE : A1 : 1:1,000 A3 : 1:2,000
DATE : 2024.
DWG NO :
NO : C-1-010

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1166호

공 시 송 달

- ○ **송달 대상:** 주식회사 서*건설 외 3
- ○ **송달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33*번길 *0, 10*호
- ○ **송달 내용:** 2026년 10월 재산세 수시분 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 **공고 일자:** 2026. 11. 9.(월)
- ○ **공고 기간:** 2026. 11. 9.(월) ~ 2026. 11. 23.(월) (14일간)
- ○ **공고 사유:** 재산세 수시분 고지서 및 독촉장 미송달분(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

위의 서류를 2026년 10월 중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미송달되었으므로 납부 기한을 2026년 11월 30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2026년 11월 30일까지 우리 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아 전국 금융 기관에 납부하시거나 위택스(www.wetex.go.kr)로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 내역에 불복하실 경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시송달 공고에 대하여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화성시 만세구청 세무2과 재산세2팀(☎ 031-5189-115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11월 9일

만 세 구 청 장

2026년 10월 재산세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연번	서류종류	과세연도	월	주요세목	과세번호	공시송달 대상자		공시송달 사유	공고일자	간주납기
						납세자명	주소(영업소)			
1	독촉고지서	2026	7	재산세(토지)	41591-105304-202607-2-256-000484	주식회사 서*건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33*번길 *0, 10*호	7 기타	2026.11.9.	2026.11.30.
2	독촉고지서	2026	7	재산세(토지)	41591-105304-202607-2-256-000485	양*철	경기도 시흥시 배미골길 2*, 150*동 100*호	7 기타	2026.11.9.	2026.11.30.
3	독촉고지서	2026	7	재산세(토지)	41591-105304-202607-2-256-000499	주식회사 성*에프*지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34*-1*	7 기타	2026.11.9.	2026.11.30.
4	수시분 고지서	2026	9	재산세(토지)	41591-105304-202609-2-330-000934	홍*수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서신면 삼밭골길 4*-2*	7 기타	2026.11.9.	2026.11.30.

화성시 만세구 제2026 - 1192호

도로점용(굴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점용(굴착)허가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9일

만세구청장

도로의 종류	지방도	노선명	301호선
점용의 목적	상수관 매설	점용기간	허가일 ~ 영구
점용의 장소	만세구 서신면 송교리 371-6번지 일원	점용면적	일시점용 : 24㎡ 영구점용 : 2.56㎡
점용물의 종류	차도 외	공사기간	착공일 ~ 2일간
공사 방법	인력 및 장비	굴착 시 교통대책	공사안내판 설치 및 차량 유도원 배치 등
도로의 복구방법	원인자 복구	도로굴착	차도 굴착
점용자의 주소·성명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시설과)	그 밖의 사항	(굴착)서신 제2026-99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화성시 공고 제2026-1202호

개인정보 처리 위탁내역 공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제2항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처리 위탁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9일

화 성 시 장

1. 부서 : 환경관리과
2. 위탁업무명 : 환경개선부담금
3. 위탁업무내용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11월) 고지서 제작 및 인쇄
4. 위탁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과세대상물건, 세액, 가상계좌번호, 전자납부번호
5. 수탁기관 : 신진에이티디주식회사
6. 위탁기간 : 2026. 11. 9. ~ 11. 20.

화성시 공고 제2026-540호

개인정보 처리 위탁내역 공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제2항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처리 위탁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9일

동 탄 구 청 장

1. 부서 : 동탄구청 도시환경과
2. 위탁업무명 : 환경개선부담금
3. 위탁업무내용 : 2026년 11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고지서 제작 및 인쇄
4. 위탁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과세대상물건, 세액, 가상계좌번호, 전자납부번호
5. 수탁기관 : 신진에이티디주식회사
6. 위탁기간 : 2026. 11. 9. ~ 11. 30.

화성시 고시 제2026 - 873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건물 등에 신규 부여, 변경,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1. 9.

화 성 시 장

○ 도로명주소 부여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양감면 요당리 583-1 외 25건

토지소재지(지번)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 고시일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변경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송곡리 25-20 외 2건

토지소재지(지번)	도로명주소(변경전)	도로명주소(변경후)	효력발생일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폐지 :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정남면 신리 25-16 외 6건

토지소재지(지번)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토지정보과(☎5189-1646)에 문의.
또는 주소정보누리집(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https://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명, 동·층·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지번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고시일자	도로명부여사유
1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양감면 요당리 583-1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양감면 암소고개로 255-16	20261109	20080204	암소고개 명칭을 이용하여 도로명 부여
2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기안동 38-4, 36-4, 36-5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기안말길 35-11 (기안동)	20261109	20091027	예전부터 불리어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3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비봉면 구포리 1550-11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비봉면 새비봉중앙로 22-5	20261109	20231127	도로명부여
4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매송면 천천리 338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매송면 화성로2545번길 18	20261109	20091117	화성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5,4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우정읍 화산리 1192-3, 1192-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우정읍 장포길 12	20261109	20080204	예전부터 불리어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6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마도면 백곡리 800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마도면 마도서길 243	20261109	20091027	행정구역명(마도면)을 이용하여 마도서길로 도로명 부여
7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우정읍 조암리 32-17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우정읍 수정고개길 75-8	20261109	20080204	고유지명을 인용하여 도로명 부여
8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장안면 독정리 663-2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장안면 장안로 417	20261109	20091117	우정읍-장안면-향남읍을 통과하는 도로구간으로 중간지역의 행정구역명칭을 이용하여 장안로로 도로명 부여
9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양감면 송산리 185-8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양감면 정문송산로241번길 22	20261109	20081218	정문송산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4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장덕리 432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남양로 273	20261109	20091027	행정구역명(남양동)을 이용하여 남양로로 도로명 부여
11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송산면 용포리 0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송산면 송산첨단2로 58	20261109	20260727	행정구역명(송산면)과 송산남측지구의 첨단산업단지를 인용하여 부여
12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정남면 괘랑리 1128-2, 1128-3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정남면 괘랑보통길 74	20261109	20081111	법정리명칭을 합성하여 도로명 부여
13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팔탄면 하저리 485-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팔탄면 하저길 61-32	20261109	20230607	행정구역명(하저리)를 이용하여 하저길로 도로명 부여
1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관리 148-1, 148-3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귓골1길 35	20261109	20080204	예전부터 불리어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15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마도면 백곡리 164-2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마도면 마도로181번길 109	20261109	20091027	마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8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6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요리 202-9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발안양감로 694-8	20261109	20140616	IC명칭(발안IC,양감IC)을 이용
17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정남면 문학리 163-17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정남면 문학남길 29	20261109	20241230	행정구역명칭 "문학"를 인용하고 방위를 적용
18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송산면 육일리 74-71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송산면 당성로 548-32	20261109	20100323	도로구간 인근의 유적지(당성)을 이용하여 당성로로 도로명 부여
19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매송면 어천리 579-2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매송면 화성로 2146-83	20261109	20091117	행정구역명칭(화성시)을 이용하여 화성로로 도로명 부여
20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활초리 573-21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안석길 222-17	20261109	20091027	행정구역명(안석동)을 이용하여 안석길로 도로명 부여
21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장덕리 산210-7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매바위로 558	20261109	20091027	고유지명을 인용하여 도로명 부여
22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양감면 요당리 119-3, 120-1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양감면 은행나무로 78-14	20261109	20080204	은행나무마을의 명칭을 이용하여 도로명 부여
23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양감면 요당리 113, 115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양감면 은행나무로 78-16	20261109	20080204	은행나무마을의 명칭을 이용하여 도로명 부여
2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서신면 제부리 20-118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서신면 해안길 36	20261109	20080204	제부도 해안가에 있는 길이라 하여 명칭 부여
25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서신면 궁평리 660-28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서신면 궁평관광로 27	20261109	20240524	궁평관광단지를 경유하는 도로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
26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송산면 삼존리 750-5, 751-1, 751-5, 752, 752-3, 752-5, 753-4, 753-5, 753-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송산면 화성로 623	20261109	20091117	행정구역명칭(화성시)을 이용하여 화성로로 도로명 부여